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조 현 예

■ 지방재정 주요 질의·회신 [I]

※ 본 질의회신 사례는 최근(2007년~2009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을 종합한 것으로서 3회에 걸쳐 게재 예정임

- 2007년 질의회신(Ⅰ), 2008년 질의회신(Ⅱ), 2009년 질의회신(Ⅲ)

<예산편성 및 운용 분야>

1.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가능 여부
2.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3. 언론사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 가능여부
4. 민간위탁금 지급범위 및 집행방법
5. 자본보조인 국비보조금의 임차(리스)비 집행가능 여부
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및 범위
7. 토지매입을 위한 신문 광고료 예산 과목
8.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9.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0. 지방의회의원 결산검사위원활동 일비(수당) 지급 여부
11. 지방의회 결산검사의 범위 및 결산검사 수당 지급 가능여부
12.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추가편성 예산의 집행범위
13. 의회비에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가능여부
14.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기 금>

15. 주차장 설치목적 기금의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여부

<기타 재정제도 관련>

1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1)
17.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2)
18.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3)
19.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예산편성 및 운용 분야>

1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가능 여부

재정정책팀-466 (2007.07.09)



질의요지

-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유·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아파트 베란다 새시(sash)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예산보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일탈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4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 제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지자체 예산보조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재정정책팀-610 (2007.08.23)



질의요지

-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속초시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할지역 내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언론사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 가능여부

재정정책팀-220 (2008.02.27)



질의요지

- 언론사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기부·보조 가능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1)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에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언론사의 경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 공익적 측면의 성격도 있지만 구독자를 위한 판매 및 각종 출판, 광고 등의 업무를 통한 경영의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단체라 할 수 있어, 그 목적과 설립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①항의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①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4

민간위탁금 지급범위 및 집행방법

재정정책팀-484 (2007.07.16)



질의요지

-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만이 민간위탁금(307-05)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도 감사위원회”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편성하는 예산과목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06.5.10)」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등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금(307-05)은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자본보조인 국비보조금의 임차(리스)비 집행가능 여부

재정정책팀-560 (2007.08.07)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시설장비 구축) 과목으로 교부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 상 효율성을 이유로 임차(리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보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3조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승인을 얻어 보조사업을 변경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하신 국비보조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비사업 주관부처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및 범위

재정정책팀-822 (2007.10.26)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행자부훈령 제233호, '07.7.18)에 의한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2008년도 예산편성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인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관직 공무원 중 경리관(분임·대리경리관 포함), 지출원(분임·대리지출원 포함)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 위 훈령에서 시·도, 시·군·구 본청 이외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지급대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대민활동비의 예와 같이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용어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제1관서 등 기타관서는 포함되지 아니함
-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회계·계약업무에 대한 “전담조직의 범위”는 경리관(또는 분임·대리 경리관)과 지출원(또는 분임·대리지출원)이 한 부서에 동시에 설치되어 지출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지출명령을 담당하는 과(또는 팀)단위의 기관을 의미함



7

토지매입을 위한 신문 광고료 예산 과목

재정정책팀-1022 (2007.12.02)



질의요지

- 대전광역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신문 광고료'의 적절한 예산집행 과목에 대한 질의임



답 변

- 「2007 지방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상에 시설부대비(401-03) 과목에는 '광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비(401-01) 과목에는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토지매입을 위한 '신문 광고료'는 원칙적으로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부대비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편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부대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비 과목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8

일용인부임 임금 예산편성

재정정책팀-1143 (2007.12.26)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행자부 훈령 제204호, 2006. 7.31)」에 따라 정규시간에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공원·하천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규정」은 환경미화원을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담당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특히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의 취지는 비록 유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정규시간에 건물 및 청사에 근무하는 청소원 등의 경우는 주로 비정규시간에 근무하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환경미화원과 다르게 근무형태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규시간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기 보다는 정규시간 근무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재정정책팀-549 (2007.08.03)



질의요지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내용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여부 및 시간외근무 인정범위



답 변

-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귀 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우리부에서 통보해 드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귀 시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고 다만,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공로휴가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실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실제 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 이외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0

지방의회의원 결산검사위원활동 일비(수당) 지급 여부

재정정책팀-532 (2007.07.31)



질의요지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의원은 통상적인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적법한 게 아닌지
- 일비 지급과 별개로 시·군 거주지에서 도청으로 출·퇴근하는 위원에 대한 교통비, 숙·식비 등 여비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변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되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적으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장소(도청)로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검사 장소(도청 등)를 벗어나 현지 확인 등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숙·식비 등)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11

지방의회 결산검사의 범위 및 결산검사 수당 지급 가능여부

재정정책팀-539 (2007.08.02)



질 의-1

-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명령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행·재정적, 신분상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 의-2

- 감사의견서에 시정조치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시정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 신설 가능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감사의견서가 접수되면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의회에서는 감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으며
- 또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결산서 승인시 의견서 검토,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질 의-3

-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답 변

-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단,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현지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12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추가편성 예산의 집행범위

재정정책팀-683 (2007.09.1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상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 예외적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있는 바,
-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에 포함된 의원의 국외여비를 추가 편성된 30%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요지

-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는 매년 행정자치부 훈령을 통하여 연간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30% 범위내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편성한도액 이외로 추가 편성된 30%의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3

의회비에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가능여부

재정정책팀-963 (2007.11.19)



질의요지

- 집행부의 주요정책사업 및 특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수행,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의원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연구활동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예산을 의회비와 별도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요지

- 예산편성기준상에 의회비는 9개 비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연구활동비는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비에 별도 예산 비목을 설정하여 의원연구비 및 위원회 운영예산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는 집행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의회사무국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4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재정정책팀-432 (2007.06.29)



질의요지

- 당초 시의회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타 자치구와의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취지로 공동이용에 필요한 추가 예산액을 삭감의결 하였으나,
- 집행부에서 해당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기정 예산에서 공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여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집행부의 조치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의회의 예산심의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이체)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집행부의 예산사용이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해 준 세출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세출예산서 상에 명기된 목적’ 이라 할 것임
- 해당사업은 ○○시 세출예산서 상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중 강남자원회수시설’ 로 명기되어 있을 뿐 공동운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별도 부기가 없는 점, 이와 별도로 공동이용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행정환경이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기 금>

15

주차장 설치목적 기금의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여부

재정정책팀-1000 (2007.11.28)



질의요지

-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동일 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절차와 조건



답 변

-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경우는 해당 기금에서 해당 목적사업을 위해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이 가능한 것임



<기타 재정제도 관련>

1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1)

재정정책팀-40 (2007.03.07)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금고지정대상자로부터 약정시 금고지정을 목적으로 ①출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②출연금 등이 기부금은 아닌지, ③출연금 등의 사용용도는?



답 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제21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협력사업 추진능력 평가”의 출연 등에 관하여는 위 기준 “3. 금고지정기준, ①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관련 유의사항, 가.”에 약정에 의한 출연 등을 할 수 있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법제처 유권해석도 동일 ‘02.5.31)을 규정하고 있으며,
 - “출연금 등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동 기준 “〈별첨〉Ⅱ.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금고지정시 약정에 의한 출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용도는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함



17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2)

재정정책팀-90 (2007.04.05)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시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①출연금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급부에 해당하는지, ②출연금의 세입항목 및 사용용도, ③동 출연금에 대한 행자부 예규, 법제처 유권해석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답 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제21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출연금 등”에 관하여는 위 기준 “3. 금고지정기준, ③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관련 유의사항, 가.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음(법제처 유권해석도 동일, '02.5.31)을 규정하고 있고,
 - “출연금 등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동 기준 “〈별첨〉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고지정시 약정에 의한 출연금은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함
- 한편, 출연금의 세입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향후, 투명한 출연금 집행 등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고지정시 출연 등은 자발적 출연이 아닌 반대급부에 의한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배치되지 않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18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3)

재정정책팀-695 (2007.09.14)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자치단체에서 변경하여 적용가능 여부,
- 평가항목중 제2항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제5항목(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자치단체 권한 축소 취지,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대한 의견



답 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제240호)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동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외는 동 기준에서 정한바대로 적용·집행하여야 하며,
- 동 기준의 평가항목중 제2항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제5항목(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경우 금융기관간 과당경쟁 및 협력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등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배점축소 등을 한 것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 기준의 평가항목 중 기타사항(15점)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할 것이며, 동 기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한 것임



19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재정정책팀-565 (2007.08.08)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하여 소송비용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답 변

- “채권”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에 의해 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시효는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지방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5년에 해당되나, 해당 채권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으로 법원의 판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